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5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 A

검 사 정수정(기소), 정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오영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인터넷 채팅 어플 '틴더'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23:45경 서울 관악구 C, D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눈을 가린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



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모 _____